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규정

<수원고검 예규 제24호, 2019. 11. 1. 제정>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수원고등검찰청(이하 '본 기관'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다.

1. 청사 보안
2.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3. 청사 내 범죄예방
4. 차량도난 및 파손 방지
5. 아동학대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 관련 정의)

①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일체의 장치로써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치

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유무선 폐쇄회로 등의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 장소에 전송하는 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거나 전송된 영상정보를 녹화·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②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③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④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⑤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①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와 위치 및 촬영 범위는 아래와 같다.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46대	* 청사건물 내·외부 및 주차장(325대) * 어린이집 내·외부(21대)

②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별도 설치한 8대는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자체 관리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① 촬영된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구분	권한	직위	소속	연락처
청사내·외부 및 주차장	총괄 책임자	총무과장	총무과	.
	운영관리 책임자	총무팀장	총무과	031-5182-3301
	시설관리 책임자	재무관리팀장	총무과	031-5182-3321
	시설관리 보조자	청사관리담당	총무과	031-5182-3327
	접근권한자	보안담당	총무과	031-5182-3307
	접근권한자	방호담당	총무과	031-5182-3392
어린이집	운영관리 책임자	어린이집원장	자체관리	031-214-9929

② 총무팀장이 개인 영상정보보호 저장, 보관, 처리 등을 총괄하고, 재무관리팀장은 시설유지관리를 총괄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①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는 다음과 같다.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비고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녹화장치 하드디스크	

② 영상정보의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한다.

제6조(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확인 방법

가. 청사 내·외부 및 주차장 영상정보 : 수사 기관 등 외부 기관에서는 총괄책임자에게 청구서를 첨부한 공문으로 청구하고, 개인은 본인이 신분증 지참 방문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 총괄책임자에게 청구

나. 어린이집 영상정보 : 보호자 등이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열람 시간과 열람 청구 장면, 청구 사유 등을 기재한 청구서 또는 의사소견서를 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

2. 확인 장소

가. 청사 내·외부 및 주차장 영상정보 : CCTV통제실 또는 관리책임자가 지정하는 곳

나. 어린이집 영상정보 : 어린이집 원장실

제7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①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

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된다.

② 총괄책임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정보주체의 열람요구를 받을 때는 10일 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다.

④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때 거부사유는 10일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 공소유지, 형집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 될 우려가 큰 경우
4. 기타 열람 등의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은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하며,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의 분실, 도난,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1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법령, 정책,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이 규정에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 시행 최소 7일전 본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사유 및 내용 등을 공지하도록 한다.

